

#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.

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학계, 법조계, 언론계 등 전문가 : 1~2명
2. 해당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: 1~2명
3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: 3명
4. 관계 공무원(단,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.)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7조(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·운영하고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 : <u>소관국장</u></p> <p>2. <u>마포구의회</u>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</p> <p>3. 마포구 체육회 이사 1~2명</p> <p>4. 체육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1~3명</p> <p>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·운영하고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.</p> <p>1. 당연직 위원 : <u>체육시설업무 소관국장</u></p> <p>2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</u>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</p> <p>3. <u>마포구 체육회</u> 이사 1~2명</p> <p>4. <u>체육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</u> 1~3명</p> <p>③ ----- 위원에게 ----- -----.</p>	<p>제17조(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) 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.</p> <p>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학계, 법조계, 언론계 등 전문가 : <u>1~2명</u></p> <p>2. 해당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: <u>1~2명</u></p> <p>3.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</u>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: 3명</p> <p>4. 관계 공무원(단,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.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